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란?

수산물이나 수산물가공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



01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1 법적 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161호)

2 시행 경과

음식점(15종)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3년 5종 추가예정

3 대상 품목

조리하여 판매하는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

4 표시 대상 (15종)

*수산 가공품 포함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뱀장어(민물장어)



미꾸라지



고등어



갈치



명태 (황태, 북어 등
완전 건조 제품 제외)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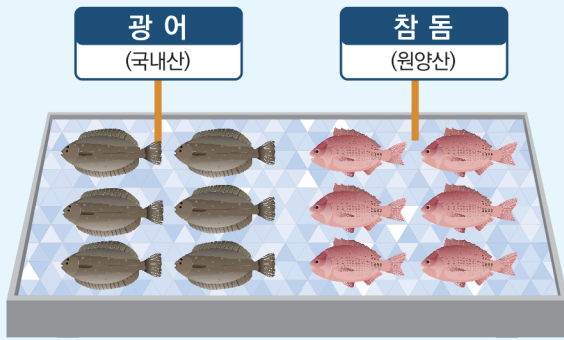
- 15개 품목을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조리용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
 (배달 앱 등 통신판매를 통한 조리 음식 포함)

- 수족관에 보관하는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 대상

5 표시 의무자

모든 음식점 및 급식소에서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 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

수산 코너



요리 코너



6 표시기준

국산 수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

원양산 수산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

수산물 가공품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수입 국가명(통관시의 원산지)

● 수산물에 단순가염,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경우 식염도 원산지 표시대상

7 표시방법

- 15개 표시 대상 수산물 :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또는 일괄 안내 표시판에 표시
 - 글자크기 : 메뉴판 및 게시판의 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
 - 일괄표시 : A3 크기(29cm X 42cm), 60포인트 이상 별도로 제작하여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 (게시판이 없으면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
-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 : 섞은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예) 낙지볶음(낙지 : 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 보관품 표시 제품 :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등 보관장소 또는 보관 용기별 앞면에 일괄 표시
- 살아있는 수산물 : 수족관 등 보관시설 앞면에 표시(30포인트 이상)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전국 279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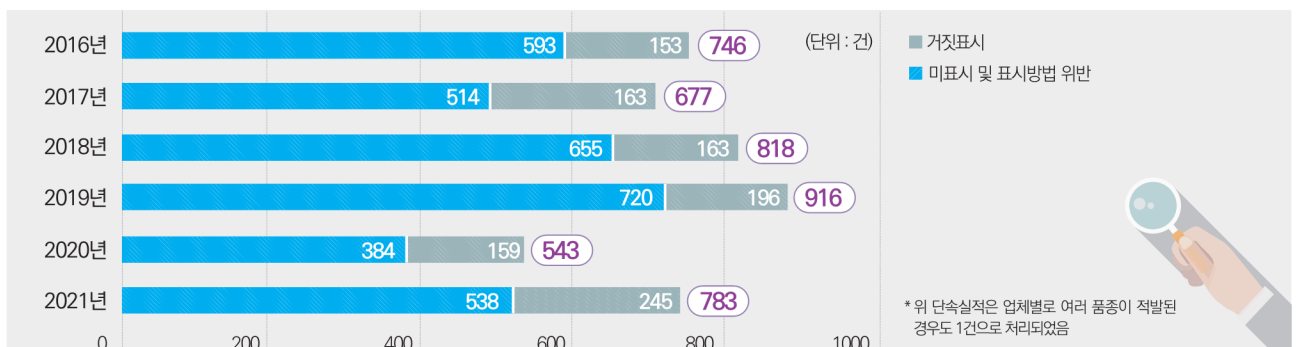
8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지정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
현재 고등어, 갈치, 낙지 등 다소비 품목 15개가 의무 표시 대상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은 현재까지 전국에 279개소가 지정



02 최근 6년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실적 및 위반 현황

〈출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위반 횟수 따라 과태료 가중 부과

(22. 3. 8, 정책브리핑)

앞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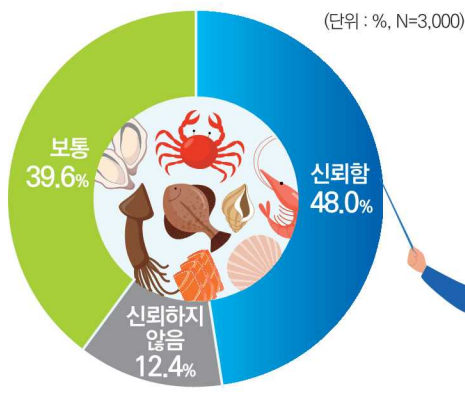
음식점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가중 처분 대상이 확대되고, 위반 이력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음식점에서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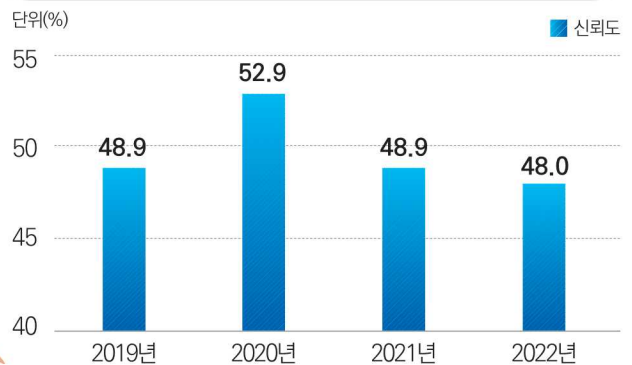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넙치, 조피볼락 등 주요 생산물 원산지 미표시(변동 없음)	품목별 30만원	품목별 60만원	품목별 100만원
살아 있는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강화, 종전 가중처분 기준 무)	위반물량 상당금액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2배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3배

03 수산물 원산지 표기 신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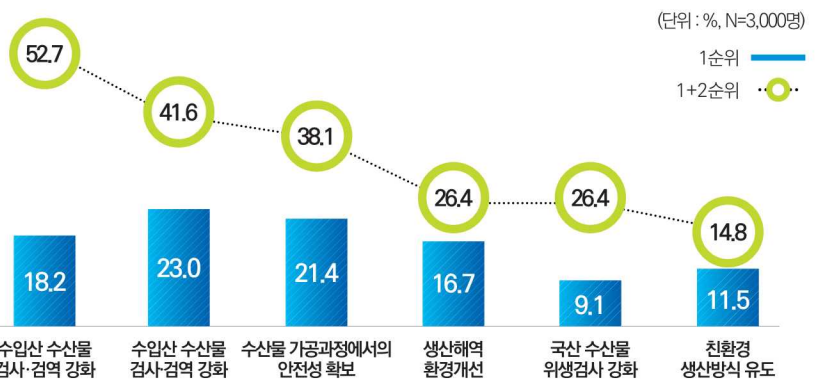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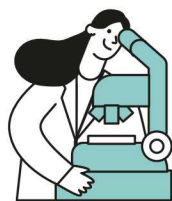
수산물 원산지 표기 신뢰정도는 22년 기준 48%이며, 국산 수산물 안전성 확대를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는 수입산 수산물 검사검역 강화를 꼽았음



연도별 수산물 신뢰정도



04 국산 수산물 안전성 확대를 위해 시급한 정책



05 자주 묻는 원산지 FAQ

1

국산과 국내산, 연근해산의 차이점은?

국산=국내산=연근해산 모두 같은 개념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와서 양식되는 경우, 미꾸라지 3개월, 새우나 가리비는 4개월, 기타 어패류는 6개월 이상 길러지면 국산으로 표기 가능

2

원양산도 국내산일까?

원양산은 국내산이 아님. 허가받은 우리나라의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한 것을 원양산이라고 함.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표기함

3

외국에서 수입한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표시는?

수입/반입한 국가명을 원산지로 표기함. 수입한 수산물 중 그 국가의 바다에서 조업한 수산물이 아니고 공해에서 잡은 수산물일지라도, 수입한 나라의 수산물로 표기함
단, 공해가 아닌 다른 나라의 해역에서 잡았다면 해당 나라의 이름으로 표기하여 수입